

학생의료공제회 규약

1977. 10. 14 제정

2008. 2. 29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제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8.2.29)

제 2 조 (명칭) 이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라 부른다.

제 3 조 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내에 둔다. (개정 2008.2.29)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(삭제 2004.2.10)

2. “진료”라 함은 이 회의 공제수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서 행하는 진료행위를 말한다. (개정 2008.2.29)

제 5 조 (공제수혜 대상자) 이화여자대학교 학생(대학원과 부설교육기관의 학생을 포함한다)은 등록시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의 개시일부터 그 학기의 말일까지 공제수혜 대상자가 된다. (개정 2003.3.12)

제 6 조 (공제수혜 자격의 상실) 학생이 졸업, 제적, 기타 사유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공제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 (개정 2003.3.12)

제 2 장 임원·이사회 및 공제비급여 심사위원회

제 7 조 (이사회와 공제비급여 심사위원회의 설치) 이 회에 이사회와 공제비급여 심사위원회를 둔다.

제 8 조 (이사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, 이사장·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.

이 사 장 1인

상무이사 1인

이 사 5인

감 사 2인

제 9 조 (임원의 선임) ①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, 상무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소장이 된다. (개정 2008.2.29)

②이사는 본교 학생처장, 대학 총학생회장,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되며, 2인은 본교 교

학생의료공제회 규약

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3.3.12)

③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11 조 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장리한다.

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전결한다.

1.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
2. 이 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

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한다.

④감사는 공제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12 조 (사무직원) ①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,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제1항의 사무직원은 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13 조 (이사회회의 임무와 회의)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이 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3.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4.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이사회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공제비급여심사위원회) ①공제비급여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는 상무이사와 본교의 부속병원장, 학생처장 및 교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하되, 그 위원장은 상무이사가 된다.

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진료를 받는 질병 혹은 부상의 공제대상 판정에 관한 사항
2. 진료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3. 공제비 급여에 관한 기타 사항

④심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공제비 급여

제 15 조 (의료기관) 공제비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한하여 급여한다.

1.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(개정 2008.2.29)
 2. (삭제 2004.2.10)
 3. (삭제 2004.2.10)
- 제 16 조 (삭제 2004.2.10)
- 제 17 조 (삭제 2004.2.10)
- 제 18 조 (공제비 급여의 범위와 제한) ①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의 진료에 대하여는 그 진료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급여한다. (개정 2008.2.29)
- ②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제비를 급여할 수 있다.
1. 예방접종
 2. 만성병관리
 3. 치석제거
 4. 진단서 발급
- ③건강검사와 치과치료에 대하여는 공제비를 급여하지 아니한다.
- (개정 2004.2.10)
- 제 19 조 (삭제 2004.2.10)
- 제 20 조 (진료에 대한 공제비 지급) ①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가 이 회의 공제수혜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를 이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(개정 2008.2.29)
- ②이사장이 제1항의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그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 지급한다. (개정 2008.2.29)

제 4 장 재산과 회계

- 제 21 조 (재원 및 현금출납) ①이 회의는 다음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1. 학생이 납부하는 공제회비
 2. 금전의 예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(개정 2004.2.10)
 3. 기타 수입
- ②이 회의 현금출납업무는 이화여자대학교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.
- 제 22 조 (공제회비의 납부) ①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시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공제회비의 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- 제 23 조 (회계년도) 이 회의 회계년도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년도와 같다.
- 제 24 조 (예산과 결산) ①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25 조 (장부의 비치 및 보고) 상무이사는 수입과 지출 및 그 명세에 관한 장부를

학생의료공제회 규약

비치 기록하여야 하며, 매 학기 말일 현재의 수입 지출 현황보고서에 재무처 회계과장이 발행하는 잔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수당지급) 임원과 사무직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약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규약 시행으로 폐지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의 재산은 이회에 귀속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준용) 공제비 급여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4. 2. 10 개정)

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2. 29 개정)

이 규약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